

통장 모집 공고

【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】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월계3동 제4통 신규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9일

월 계 3 동



◆ 아 래 ◆

1. 통장의 자격조건

제4통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

2. 통장이 하는 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 | ② 통·반의 비상연락 훈련 |
| ③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| ④ 수방·제설 등 관내 각종 시설 점검 |
| ⑤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| ⑥ 행정시책의 소통,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|
| ⑦ 적십자 등 지역사회단체 지원 | ⑧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|

3. 모집현황

- ① 관 할 통 : **제4통(미성아파트 1동~6동)**
- ② 모집기간 : **2026. 9. 9. ~ 9. 19.[10일간]**
- ③ 제출서류 : **위촉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이력서(사진3x4cm)1통, 자기소개서 각1부, 봉사활동 확인서(공고일 기준 5년 이내)**

※ 서류양식 월계3동 홈페이지, 주민센터(2층 사무실)에 비치

- ④ 제 출 처 : 월계3동주민센터
- ⑤ 선정방법 : 서류제출 후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통해 통장이 위촉

4. 통장 신청 제한

- ① 공공일자리(공공근로, 자활근로, 아르선일자리)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
- ②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이상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③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
- ④ 신용불량자 또는 현재 또는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
- ⑤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등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

5. 문의 및 연락처 : 월계3동 주민센터(☎2116-2466)